

「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」 운영 재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1165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8월 14일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·연계, 청년의 사회적 안전망 제공 및 고립·은둔 청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서울시 청년정책의 일선 집행체계로서 생활권 기반 청년 종합지원을 위하여
- 나.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2, 「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」 제20조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
- 다. 청년 활력 프로그램 및 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(단체)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- 시설명 :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
- 소재지 :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지하 188 (558.22m²)
- 공간구성 : 상담실, 라운지, 공유주방, 회의실, 사무실 등

나. 주요 위탁내용
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위탁기간 : 2024. 1. 1. ~ 2025. 12. 31.(2년)
- 위탁업무 : 서울청년센터 서초 오랑 사업 및 시설 운영
 - 청년지원정보 접속 · 제공 및 분야별 종합상담 사업

-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사업
 - 청년의 심리적 안정 및 자립지원, 취약계층 청년 지원 등 사회안전망 사업
 - 지역단체 및 시설 등과의 연계 협력 사업
 - 지역별 청년 활동 공간 및 기반 제공
 - 시설·물품 등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등
- 소요예산 : 621,603천원 ('24년 예산편성안 기준)
 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(재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2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0조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제6조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,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
- 청년시설 관리·운영에 대해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,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기관(단체)에 위탁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-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2(청년시설의 설치·운영 등)
- 「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」 제20조(청년지원기관의 설치·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 등)

나. 예산조치 : 2024년 예산편성 추진

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-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3. 7. 20.) : 적정

※ 작성자 :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이은지 (☎2133-4311)